

의 국내적 규제와 - 의 반덤핑관할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관할권문제의 과 -

Judicial Review of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n USA: How it Perceives its Jurisdictional Dispute concerning the Anti-dumping law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저자 (Authors)	김기영 Ki-young Kim
출처 (Source)	기업법연구 19(4) , 2005.12, 73-105(33 pages) BUSINESS LAW REVIEW 19(4) , 2005.12, 73-105(33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기업법학회 Korea Business Law Association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665085
APA Style	김기영 (2005). 의 국내적 규제와 - 의 반덤핑관할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관할권문제의 과 -. 기업법연구, 19(4), 73-105
이용정보 (Accessed)	조선대학교 220.67.200.*** 2019/08/02 16:05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通商의 국내적 규제와 司法審査

-美國國際貿易法院의 반덤핑관할권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관할권문제의 성격과 意義-

김 기 영**

< 目 次 >

I. 序論	V. 國際貿易法院管轄權問題의 성격과 意義
II. 通商紛爭解決을 위한 美國의 司法節次	VI. 結語 : 大韓民國 貿易行政과 司法統制
III. 國際貿易法院의 管轄權一般	
IV. 반덤핑법상의 管轄權	

I. 序 論

미국은 세계 최대의 輸入國이다. 우리나라 역시 미국은 주요 수출시장으로서, 대미무역량이 국가총교역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막대하다. 향후 수출시장의 다변화정책에도 불구하고 대미무역의존도는 그리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대의 국제사회가 자국의 통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세계무역기구(WTO)체제의 출범을 합의하였고, 아직 불완전하긴 하지만 종래의 GATT체제보다는 매우 효율적으로 국제통상 영역에서의 법의 지배를 실현시켜 나가고 있다. 국제통상질서가 정치적 성격이 보다 강했던 GATT체제로부터 국제사회의 합의와 법적 통제를 중시하는 체제로 나아감에 따라 기업은 주먹구구식

* 이 논문은 2005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조선대학교 부교수.

貿易觀行을 탈피하여 국제통상법 및 각국의 국내통상법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법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물론 기업이 자신의 상품을 수출하기 위하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미리 문제되는 관련 국제법규 및 관련국의 통상법규를 검토하여 분쟁예방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이다. 그러나 무역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나아가는 경우가 있는바, 각국은 자국의 통상법상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법절차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본고에서는 반덤핑에 대한 미합중국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과 관례의 태도를 살펴보고, 향후 우리 기업이 대미무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분쟁과 관련하여 참고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미합중국 국제무역법원의 管轄權이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미합중국은 우리의 최대수출국의 하나이고, 국제교역에 있어서도 지도국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슈퍼 301조 등 강력하고(어느 면에서는 부당한) 복잡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관련하여 통상규율체계를 가지고 있다.¹⁾ 따라서 미국정부의 있을 수도 있는 자의적인 통상정책의 결정과 집행에 대한 사법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무역법원이라는 연방차원의 전문법원을 두어 이를 해결하고 있다.

둘째, 관할의 문제는 어떠한 분쟁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법원에 제소하여야 適法한 提訴로서 實體判斷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의 문제로서, 기업이나 기업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가 첫번째로 부딪히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셋째, 현재 WTO의 분쟁해결절차는 국제법적 성격의 것으로 국가만이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으나, 미국 국제무역법원은 미국정부의 통상법령이나 행정행위 등에 대하여 기업이 직접 제소할 수 있어, 기업의 입장으로는 보다 實效的이고 직접적인 분쟁해결수단이 된다. 특히 WTO분쟁해결기구가 국제법적 성격의 분쟁해결기구로서 그 구체적 실효성이 종종 의문시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국내법적 절차는 보다 확실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

넷째, 미국의 통상정책 및 집행은 비록 국내법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 국제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슈퍼 301조는 물론이고 반덤핑규제 등에 있어 미국의 태도는 국제사회에서 종종 비난받아온 바, 이에 대한 적절한 사법통제가 문제된다. 따라서 그 관할권의 범위를 살펴봄으로써 사법부의 통상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 통상의 국내적 규제에 있어 그 정도와 원칙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본다.

1) 정철호, “미국통상법의 입법패턴과 제도 변화”, 「외대논집」 19권 3호(1999).

II. 通商紛爭解決을 위한 美國의 司法節次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사법제도는 연방국가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복잡하다. 먼저, 주법원과 연방법원의 관할이 문제된다. 미국헌법은 연방법의 최고성을 선언하고 있는 바, 州憲法과 州法律은 聯邦憲法은 물론이고 聯邦法律에 위반되어서는 안된다. 미국의 법원은 연방법원과 주법원으로 나누어지는데, 당해 법원의 관할권은 연방법원의 경우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근거하고, 주법원의 관할권은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헌법과 주법률에 근거하여 창설된다.

연방법원의 구성은 연방대법원과 연방항소법원, 연방지방법원의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연방법원은 당사자가 異州의 주민인 경우의 민사소송(diversity jurisdiction), 일정한 액 이상의 민사소송, 그리고 민사, 행정, 형사소송을 불문하고 사안의 쟁점이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관련된 경우에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연방법원은 異州의 주민간의 민사소송 및 일정액 이상의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주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해야 한다.

미국의 연방법원은 미국연방대법원과 우리의 고등법원에 해당하는 주대법원상고법원, 연방항소법원, 12개의 연방순회항소법원 등 14개의 항소법원 및 우리의 지방법원급에 해당하는 91개의 지방법원, 미국청구법원, 미국조세법원, 국제무역법원 및 다양한 행정위원회로 구성된다.²⁾ 91개의 지방법원과 미국조세법원 및 행정위원회의 판결 및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관할지역의 12개의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며, 국제무역법원 및 미국청구법원, 행정위원회의 판결 및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하게 된다.

그리고 주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복은 고등법원급인 주대법원상고법원에 항소하게 되고, 위 3개의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상고허가장(writ of certiorari)에 기초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상고허가는 제한적이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특이한 점은 연방정부의 행정위원회는 소위 독립규제위원회로서 엄격한 의미의 사법기관이라고 할 수 없으나, 司法的 성격의 권한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2) 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1994), 1074-77면.

(표1: 美國의 司法體系圖)

연방대법원(United States Supreme Court)						
주대법원으로부터 의 상고 (Appeals from State High Courts)	연방순회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for Federal Circuit)			12개의 연방항소법원 (U.S. Court of Appeals: 12 Circuits)		
주대법원 (State High court)	각종의 행정위원회 (Various Administrative agencies)	연방청구법원 (U.S. claims Court)	국제무역법원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연방조세법원 (U.S. Tax Court)	94개의 연방지방법원 (U.S. District Court)	각종의 행정위원회 (Various Administrative Agencies)

통상에 관련한 사건은 전문법원인 국제무역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통상분쟁은 일반적으로 연방정부의 법령, 국제조약, 대통령, 상무성, 관세청장, 각종의 위원회 등 통상 관련 정부부처의 행정행위 등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국제조약 및 외국과의 통상문제에 관한 정부부처의 행정행위는 연방헌법에 따라 연방법과 같은 위상을 갖거나 연방정부의 권한행사이므로,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연방차원의 법원이 담당하게 되며, 이에 관한 전문법원으로서 국제무역법원이 창설된 것이다. 국제무역법원의 법적 성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상과 관련한 정부조치 등에 관하여 1심으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연방차원의 1심법원이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둘째, 통상과 관련하여 기업이 부딪히는 법률문제는 다양하나, 국제무역법원은 정부의 일정한 조치 등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를 전담하는 전문법원이며, 통상에 관련한 행정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셋째, 국제무역법원의 국제적 성격이다. 동 법원은 국내법원이나, 통상문제의 국제적 성격으로 인하여 다국적 기업 등이 소송당사자가 되며, 그 판결은 통상에 있어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특히 통상에 있어서 미국의 일방주의적 접근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종종 통상과 인권문제 및 국제정치적 전략 등을 연계시키는 미국정부의 접근방식 등과 관련하여 국제무역법원의 견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넷째, 국제무역법원의 한계적 성격이다. 국제무역법원은 국제법과 국내법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접점에 위치해 있다. 국제무역법원은 연방법의 위상을 갖는 통상관련 국제조약 및 행정협정 등을 존중해야 하고, 이를 해석 적용하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고 있

다. 그러나 형량자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고 미국의 통상이익만을 지지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WTO의 분쟁해결기구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 이때에는 국제법의 실효성이 위협 받을 수 있다.

III. 國際貿易法院의 管轄權一般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회가 국내수입 및 국제거래에 관한 연방법률에 근거한 소송에 관하여 일원적인 사법심사를 행하기 위하여 제정한 1980년 관세법원에 관한 법률(28 U.S.C.A 1581)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동법에서는 1930년 관세법 515조 등에 근거한 행정부처의 결정에 관한 소송 등 9가지의 관할권을 구체적으로 부여하고, 포괄조항(catch-all)을 두어 위 9가지 사유이외에도 수입에 관한 관세 및 의무부과, 수량제한 및 수입금지, 그리고 위 9가지 사유에 따른 집행조치 등에 관하여 포괄적인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 관점에서는 매우 정치하고 명료하게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을 획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실제 동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 관할권의 인정여부는 사안에 따라 매우 가변적이다. 후술하다시피 반덤핑 등의 경우에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엄격한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미국무역법원에 제소하기 위하여는 연방법률에 규정된 관할권요건을 충족시키는 외에 연방헌법에 따른 일반적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일반론적 관점에서 요구되는 국제무역법원의 제소요건의 성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행사는 연방법률에 의하여 관할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異州의 시민간의 소송일 것, 일정한 금액이상의 청구일 것,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의 적용이 문제될 것(federal question) 등을 요하는 주법원과 연방법원의 민사소송에 관한 관할권 획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제무역법원은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연방법률이 규정한 사항에 관하여 관할권을 부여받으므로 당연히 연방문제, 소위 federal question의 범주내에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둘째, 연방헌법의 해석상 갖추어야 할 일반적 제소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즉 사법권행사의 한계를 제공하는 구체적 사건성(case or controversy), 사건의 성숙성(ripeness), 제소이익의 문제(mootness), 당사자적격(standing)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으므로 긴 설명을 생략한다.³⁾

3) 김기영, 「헌법강의」(박영사, 2002), 27-51면.

셋째, 국제무역법원은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라는 관점에서 미국법체계상 행정법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 즉 미국의 경우 엄격한 권력간의 분립으로 인하여 의회, 대통령, 사법부는 각각 그 본래의 권력작용 즉 法定立作用, 法執行作用, 法確認作用만을 담당하여야 하고, 委任立法禁止의 원칙이 장기간 입법과 집행작용을 구별지운 바 있다.⁴⁾ 미국의 집행권은 대통령에 일원적으로 귀속되고, 행정각부의 장은 대통령의 자문기관에 불과하여, 그 권한의 범위도 연방헌법에 근거한 일정한 사항에 국한되며, 대륙법계에서 볼 수 있는 행정의 법률유보, 재량행위론, 행정심판제도, 행정에 대한 사법심사 등은 주간의 통상에 관한 연방정부적 차원의 규제가 확대되면서, 즉 연방국가로서의 통합의 정도가 진전되면서 비로소 문제되기 시작한 것이다. 연방차원의 행정수요가 확대되고, 주간 통상위원회, 무역위원회 등 소위 독립규제위원회 및 행정청이 대륙법계에서 볼 수 있는 재량행위적 성격의 행정작용 및 행정법규정립작용을 수행하면서 이에 대한 사법통제가 필요하게 되는 한편, 독립규제위원회 및 연방행정청은 司法的 性格의 권력작용을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대륙법계의 행정에 대한 확일적 사법통제가 법치주의의 불변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과는 어느 정도 성격을 달리하고, 연방헌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원의 관할권부여법령에 따라 관할의 범위가 정해진다.

반덤핑법상의 분류에 관한 관할이외에 국제무역법원은 제 1심으로서 재무성, 상무성, 국제무역위원회, 대통령, 국제무역대표부 등의 통상관련 행정부서의 결정과 처분의 합법성 여부를 통제한다. 그 관할권은 크게 (i)반덤핑에 관한 결정 및 조치 (ii)상계관세부과, 수량제한, 수입금지 등 수입에 관한 결정 및 조치 (iii)행정적 명령 (iv)부과금반환 등 금전적 청구 (v)각종 무역관련 허가 (vi)지적재산권관련 결정 및 조치 (vii)형식적 하자에 관한 결정 및 조치 (iiiiv)기타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⁵⁾

(표2: 미국무역법원의 관할사항개관)

1. 반덤핑	a. 행정부작위 b. 비밀공개 c. 관세산정 d. 관세청산에 관한 행정명령 e. 위법한 행정재판에 대한 이의 f. 북미자유무역지대의 관할권과의 경합문제 g. 행정계약
2. 수입구제조치	a. 상계관세부과처분

4) 미국의 권력분립론과 대통령의 권한에 관하여 Stone, G외 3인 공저, Constitutional Law, Little Brown, Ltd., 1991, p.363 이하 참조.

5) 주용준, "미국행정법의 생성과정과 사법심사문제", 「학술지」 2권 1호, 319-349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b. 상계관세 이외의 과징금 등 c. 행정청의 평가방식 등 d. 수입금지(Embargoes) e. 수입수량제한조치(Quotas) f. 통관불허처분(Exclusion orders) g. 자율적 수입규제조치(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 h. 대통령 명령(presidential proclamations) i. 수입규제조치청원의 기각 j. 보복관세 k. 고율의 관세부과를 위한 무역담합 l. 허위서류 등의 사용 m. 기타
3. 행정청의 명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행정청의 비공식적 명령 b. 공문에 의한 명령 c. 수입전 행정명령 d. 이의에 대한 부분 거부처분 e. 기타
4. 금원관련 소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과징금 등(charges or exactions)의 납부 b. 예치채권 (bonds) c. 벌금(penalties)납부 d. 이자(interest)납부 e. 항구 등 사용료 f. 부당환급 g. 창고 등의 사용료 납부
5.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외국무역지대에 대한 허가 b. 관세사 면허신청 c. 컨테이너정류소 면허신청 d. 카아트맨(Cartman)면허신청
6. 지적재산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상표권 b. 저작권
7. 형식적 하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이의제기의 부적법 b. 소환장의 하자
8. 통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면세통관 b. 통관허가요건 c. 외국무역지대에 의한 통관 d. 우편상품의 통관 e. 장래의 통관
9.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행정행위이외의 행위에 대한 관할권문제 b. 관할권조항에 관한 법령의 근거가 없는 경우 c. 관할권존부의 입증책임

IV. 반덤핑법상의 管轄權

아래 도표 3, 4에서는 商務省(Department of Commerce: Administering authority),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관세청(U.S. Customs Service) 등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반덤핑판정 및 반덤핑관세부과의 메커니즘,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관련조항을 보여주고 있다.⁶⁾ 주지하다시피 반덤핑관세의 부과는 1930년 관세법에 근거한 것으로서 19 U.S.C.A 1516에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이에 상응하여 28 U.S.C.A. 1581는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근거법률이 된다.

(표3: 반덤핑관세의 부과메커니즘의 4단계)

1. Judicial process	1. 조사단계 (investigative stage)	1. 상무성의 조사개시결정 2.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피해판정 3. 상무성의 덤핑예비판정 4. 상무성의 덤핑최종판정 5. 국제무역위원회의 피해최종판정
	2. 관세사정단계 (duty assessment stage)	1. 이전의 통관에 대한 소급사정 2. 장래의 통관에 대한 사정 (연례재심 등)
	3. 철회절차 (revocation procedure)	
2. Judicial review	국제무역법원-연방항소법원- 연방대법원	

(표 4: 반덤핑과 관련한 國際貿易法院의 管轄權에 관한 主要 聯邦法律條項)

28USCA1581(a)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f any civil action commenced to contest the denial of protest, in whole or in part, under section 515 Tariff Act of 1930.	미국무역법원은 1930년 관세법 515조상의 이의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
28 USCA 1581(c)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f	미국무역법원은 1930년 관세법 516A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

6) 미국의 반덤핑법에 관하여 이춘삼, 「미국의 반덤핑법 : 문제점과 대응전략」 (서울경제출판사, 1987) 참조.

<p>any civil action commenced under section of 516A of the Tarriff Act of 1930.</p>	
<p>28 USCA 1581(f)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hall have exclusive of any civil action involving application for an order directing the administering authority or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to make confidential information available under section 777(c)(2) of the Tariff Act of 1930</p>	<p>미국무역법원은 1930년 관세법 777(c)(2)에 따라 행정청 또는 무역위원회에 대하여 비밀보공개공개의 청원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배타적 관할권을 갖는다.</p>
<p>In addition to the jurisdiction conferred upon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by subsections (a)-(h) of this section and subject to the exception set forth in subsection (j) of this section,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shall have exclusive jurisdiction of any civil action commenced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agencies, or its officers, that arises out of any law of the United States providing for-(1) revenue from imports or tonnage(2) tarriffs, duties, fees, or other taxes on the importation of merchandise for reasons other than the raising of revenue (3) embargoes or other quantative restrictions on the importation of merchandise for reasons other than the protection of public health or safety; or (4)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with respect to the matters referred to in paragraphs (1)-(3) of this subsection and subsections (a)-(h) of this section</p>	<p>본조 (a)-(h)항에 따라 무역법원에 부여된 관할권외에 다음 사항에 관한 미합중국법의 법령과 관련하여 미국, 미국 정부기관 및 관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서 포괄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한다. 다만 (j)항에 따른 관할권은 예외이다.</p> <p>(1) 수입관련 세수 및 종량세 (2) 정부수입증대목적 이외의 이유로 부과되는 상품수입관련 관세, 각종의 세금, 공과금 (3) 공중보건과 안전 이외의 목적으로 행해진 물품의 수입금지 및 수입수량제한조치 (4) 위 (1)-(3)단 및 본조 (a)-(h)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행정청의 행위 및 법집행</p>

우리 법상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한 司法審査는 行政廳의 處分을 그 대상으로 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처분에는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 권력적 사실행위, 외부에 대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포함하며, 부분허가, 예비허가,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계약을 모두 포함하는 행정계약의 경우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성 여부에 관하여 견해가 갈린다.

미국의 경우에도 국제무역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칙적으로 상무성, 국제무역위원회, 관세청 등 행정관청의 대외적 의사표시가 담긴 행정처분(일반적으로 덤핑최종판정, 산업피해최종판정, 반덤핑관세의 부과)이 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반덤핑법에 관한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은 (i)전술한 연방헌법상의 사법권발동요건과 관련한 제소요건 (ii) 관할권창설법률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처분성” “사법절차의 보충성”, “행정부작위”, “행정계약”, “정보의 공개 또는 금지” 등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이들 문제에 대한 국제무역법원의 판례를 살펴본다.

1. 處分性

1.1. 내부적 의사결정과정

무역위원회의 피해부재판정을 상무성의 최종처분에 대한 내부적 의사결정상의 판정으로 취급하여 처분성을 부인하고 상무성의 최종판정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한 판례가 있다. 국내기업의 반덤핑제소와 관련하여 제 3의 관련 국내기업이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에의 피해부재결정을 근거로 당사자참가를 하면서 무역위원회의 피해부재결정이 있다면 법원은 더 이상 반덤핑 관세액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법원은 동 주장을 배척하였다.⁷⁾ 법원은 그러한 때에 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덤핑행위를 한 특정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고 판시하고 있다. 원칙적으로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상의 의사표시는 대외적 효력을 갖지 않으므로 처분성을 갖지 않지만, 무역위원회의 피해부재판정이 단순한 내부적 의사결정상의 의사표시에 불과한 것인가는 의문이다. 또한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존재의의는 부담적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 및 법적 이익을 구제하는데 있고, 사법부는 행정청과 같이 적극적으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판정을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행정기관이 국내산업에 피해가 없다는 판정을 함으로써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근거가 소멸한 경우 법원이 적극적으로 덤핑행위 및 국내산업에의 피해를 인정하고 반덤핑관세를 부과함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은 사법권의 소극적 성격,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할 수 있다. 둘째, 무역위원회의 판정은 소위 행정관청인 상무성의 내부적 의사결정과정을 형성하는데 불과하다고 보아 상무성의

7) Huffey Corp. v. U.S., 9 Ct. Int'l Trade 107, 604 F. Supp. 1250, 6 Int'l Trade Re. BNA 2049 1985.

반덤핑관세 부과처분이 엄존하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 즉 무역위원회의 피해판정은 법령의 명문상 반덤핑관세부과의 필요전제조건이므로 동 위원회의 피해부재판정이 있다면 상무성의 판정은 당연무효가 되고, 관세평가에 관한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덤핑행위에 대한 미국의 과도한 규제가 후진개발도상국의 통상이익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 차제에 비록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이해관계 있는 국내기업에 행정기관에 대한 반덤핑제소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사법기관인 무역법원이 행정기관과 유사하게 적극적으로 반덤핑행위의 규제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유리수입업자가 국제무역에 관한 행정권을 행사하는 상무성을 상대로 조사개시절차를 구하는 사안에서, 무역법원은 상무성의 판정이 중간적 처분에 불과한 경우에는 행정의 편의와 신속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종판정이 있기까지는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였다.⁸⁾ 한편 무역위원회가 상무성과의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덤핑결정에 대하여수출자가 제소한 사안에서는, 19U.S.C.A. 1516a의 명문의 근거에 따라 동 무역위원회의 결정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상무성의 최종판정의 일부로서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면서 소송을 각하하였다.⁹⁾ 동 판결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바, 원칙적으로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성 있는 판정은 administering authority인 상무성의 최종판정을 의미하고 무역위원회의 판정은 상무성판정에 대한 심사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사항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법원의 견해에 의하면 입법연혁에 비추어 무역위원회의 판정이 독립적으로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론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법률의 명문과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할 때에 대외적 의사표시가 담긴 행정청의 처분은 상무성의 최종판정으로 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입론에 의할 때에 무역위원회의 판정은 내부적으로 상무성의 최종판정에 기속적 효과를 갖는다 하더라도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구성하는데 불과하여, 상무성의 최종판정의 구성부분으로서만 법원의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한편, 처분의 최종성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권한행사에 있어 상호관계가 문제된다. 반덤핑조사신청과 판정이 반복되어 수입업자연합이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반덤핑조사를 종결하고 반덤핑조사신청을 1년간 거부할 것을 법원에 제소한 사안¹⁰⁾에 대하여, 상무성

8) PPG Industries, Inc. v. U.S., 2 Ct. Int'l Trade 110, 525 F. Supp. 883, 3 Int'l Trade Re., BNA 1304, 1981.

9) Brother Industries, Ltd. v. U.S., 15 Ct. Int'l Trade 387, 769 F. Supp. 374, 13 Int'l Trade Re., BNA, 1688, 1991.

10) Associacao Dos Industriais de Cordoaria E Redes v. U.S., 17 Ct. Int'l Trade 754, 828 F. Supp. 978, 15 Int'l Trade Re. BNA, 1994, 1993.

을 피고로 한 사안과는 달리 무역위원회는 상무성과 협의 하에 단순히 예비조사만을 할 뿐이므로 동 무역위원회를 상대로 한 제소는 처분의 최종성, 구제의 실효성의 관점에서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1.2. 조사절차진행중의 중간처분

상무성의 덤핑행위에 대한 조사절차가 진행 중에 조사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 조사중지가처분을 법원에 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원칙적으로 무역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은 상무성 또는 무역위원회의 결정 및 판정 등 중국적 처분을 대상으로 하며, 또한 그 관할권은 관할권부여법령조항에 따라 구체적이고 한정적으로 법조항에 열거되어 있다. 소비에트 사회주의공화국으로부터의 우라늄수입과 관련하여 덤핑조사가 진행 중 동 수출국이 소멸하였으므로 조사를 계속할 이익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조사의 중지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에서 미국의 무역법원은 심판대상인 중국적 행정처분은 존재하지 않으나, 조사절차의 진행 중 중간처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부인되는 경우 사법심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무익한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당사자의 이익에 반하는, 즉 심판대상이 되는 중국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주장을 받아 들여 포괄적 관할권부여조항에 근거하여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다.¹¹⁾

조사개시의 결정과 그 진행에 관하여 무역법원은 중국적 판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근거한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상무성의 조사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당사자가 중국적 판정을 기다리는 경우 중국적 판정에 대한 관할을 규정하고 있는 28 USCA 1581(c)를 통하여 가능한 권리구제가 실효를 거둘 수 없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조사 진행 중인 경우에도 28 USCA 1581(i)에 따라 무역법원에 관할권이 창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절차의 진행 중에 내려진 모든 결정은 중국판정에 대한 불복시 무역법원에 의하여 심리되도록 하려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므로, 단순히 중국판정이 내려진 후에 이를 법원에서 다투는 경우 상무성의 완고한 태도로 인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공정하게 반영될 수 없다는 상황만으로는 조사절차 등의 진행 중 내려진 결정이 심판대상적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¹²⁾

덤핑행위에 대한 조사절차진행중의 외국시장가격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가

11) *Technabexport, Ltd. v. U.S.*, 16 Ct. Int'l Trade 420, 795 F. Supp. 428, 14 Int'l Trade Re. BNA 1403, 1992.

12) *Koyo Seiko Co., Ltd. v. U.S.*, 13 Ct. Int'l Trade 461, 715 F. Supp. 1097, 11 Int'l Trade Re. BNA 1534, 1989.

문제된다. 외국시장가격의 결정은 처분의 최종성이라는 관점에서 덤핑최종판정 등과 달리 중간처분에 불과하여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상무성의 주장에 대하여 이를 배척하고,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근거하여 그 후의 행정청의 조사와 최종판정과는 독립적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¹³⁾ 분기별 외국시장가격결정에 대한 불복은 비록 동 사안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장기간에 걸친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 그러나 외국시장가격결정에 있어 중앙판매세액의 처리방법에 관한 상무성의 판단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한다.¹⁴⁾

1.3. 조사절차개시결정 및 예비판정

미국 상무성의 반덤핑판정에 대한 무역법원에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최종판정을 그 심판대상으로 한다. 예비판정에 대한 제소는 심판대상이 갖추어야 할 처분의 최종성의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Harrman & Reimer Corp.* 사건¹⁵⁾에서 미국무역법원은 19 U.S.C.A. 1671b(e)에 따를 때에 당해 수입품이 미국시장에서 공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중대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근거하여 예비판정도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국내기업의 주장에 대하여, 19USCA 1516a에서 열거한 관할에 관한 사항은 한정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고, 최종판정에 대한 제소만을 허용하고 있는 법문에 비추어 볼 때에 예비판정에 대한 제소는 허용하지 않으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추지할 수 있으므로 중대한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따라 관할권이 창설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원칙적으로 조사절차개시결정 자체에 대하여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즉 반덤핑과 관련하여 반덤핑에 관한 상무성의 최종판정이 아닌 조사절차의 개시결정 등에 관한 무역법원에의 불복이 가능한가가 문제되는 바, 이를 승인하는 경우 기업은 무익한 조사절차의 진행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의 낭용과 조사절차로 인한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무역법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위법한 행정절차(행정재판이라고 할 수 있다)의 발동에 관한 상무성 등의 결정에 관하여 불복을 허용하고 있다. *Association Colombiana de Exportadores de Flores (Asocoflores)*¹⁶⁾에서는

13) *Ad Hoc Committee of Florida Producers of Gray Portland Cement v. U.S.*, 18 Ct. Int'l Trade Re. BNA 2356, 1994.

14) *Alhambra Foundry., Ltd. v. U.S.*, 12 Ct. Int'l Trade 343, 685 F. Supp. 1252, 10 Int'l 1110. 701 F. Supp. 221, 10 Int'l Trade Re. BNA 2364, 1988.

15) *Harrman & Reimer Corp. v. U.S.*, 1 Ct. Int'l Trade 148, 509 F. Supp., 1276, 2 Int'l Trade Re. BNA 1305, 1981.

외국화훼수출업자가 미국화훼산업이 제청한 반덤핑조사절차가 조사절차청구의 이유 등의 적시가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상무성의 조사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제소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미국 무역법원은 이러한 경우 외국화훼수출업자에게 조사절차의 진행을 묵인하고 의무적으로 당해 조사절차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사법의 효율성의 관점에서 부당하다고 하면서 관할권을 승인 하였다. 물론 조사절차에 있어 상무성의 예단가능성이 확실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사자는 조사절차에 참여할 필요가 없고 바로 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¹⁷⁾ 국제무역법원은 행정위원회나 행정청이 정치적 편견 혹은 부당한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는 엄격한 사법통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컨대 무역위원회 구성원의 정치적 편향가능성 및 법상 근거 없는 보복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외국수출업자는 무역위원회의 조치 등에 관하여 바로 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¹⁸⁾ 즉 법원은 앞서든 판례의 태도와 달리 무역위원회의 독립적 행정관청성을 보다 강하게 인정하고 동 위원회에 대한 제소를 적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국제무역법원이 통상정책에 있어 정치적 영향을 제거하고 법에 따른 엄격한 사법심사를 행하려는 의지는 Byrd법에 대한 합헌성심사에서도 확인된다. 반덤핑관세수입을 국내 기업에 배분케 한 소위 Byrd 입법(동 법은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었다)의 합헌성을 다투는 경우 상무성은 법률의 합헌성여부를 심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의 수출업자는 바로 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¹⁹⁾ 비록 실체심리에서 위헌이 선언되지는 않았지만²⁰⁾ WTO에 의한 통상의 법의지배가 현실화되어가는 작금에 이

16) *Asociacion Colombiana de Exportadores de Flores (Asocoflores) v. U.S.*, 13 Ct. Int'l Trade 584, 717 F. Supp. 847, 11 Int'l Trade Re. BNA 1645, 1989.

17) *NEC Corp. v. U.S. Dept. of Commerce*, 967 F. Supp. 1305, 19 Int'l Trade Re. BNA 1553, Ct. Int'l Trade 1996.

18) *Corus Group PLC v. Bush*, 217 F. Supp. 2d 1347, Ct. Int'l Trade 2002.

19) *Pacific Giant, Inc. v. U.S.*, 223 F. Supp. 2d 1336, Ct. Int'l Trade 2002.

20)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Byrd법이 헌법상 근거 없이 벌금을 부과함으로써 적법절차에 위반하여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반덤핑관세 등이 형벌로서 벌금이기 위하여는 첫째, 사회적 위해의 제거와 부과된 금원간에 비례성이 필요 없으며, 둘째, 부과된 반덤핑관세 등이 정규관세보다 큰 폭으로 다액일 것 등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동 사안의 Byrd법상의 반덤핑관세 등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즉 법원은 "First, a penalty amount usually has no relation to the cost of remedying the harm caused by a prohibited act. Second, 'a duty may constitute a penalty where it is 'enormously in excess of the greatest amount of regular duty ever imposed upon an article of the same nature'. Because the antidumping duty assessed here is identical to that assessed prior to implementation of the Byrd Amendment, the amount cannot be considered so large

러한 국제무역법원의 태도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나 멕시코산 파이프 수입과 관련한 상무성의 anticircumvention inquiry 절차 중에 동 절차의 진행금지청구에 대하여는 최종 판정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irreparable harm)를 야기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면서, 19 USCA 1581 (i) 관할권창설요건인 “명백하게 부당한 경우(manifestly inadequate)”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²¹⁾

1.4. 최종판정후의 처분 등

국제무역법원의 심판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상무성 등의 행위가 일정한 법률효과를 야기하기 위한 대외적 의사표시를 담은 처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반덤핑 판정 후의 관세자동산정이 처분성을 갖는가에 관하여 법원은 그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따라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다. 즉 수입품이 공정가격이하로 수입되어 덤핑판정이 나고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후, 관세액 산정 등에 관한 다툼과 관련하여 법원은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인 28 USCA 1581(i)에 근거하여 무역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²²⁾ 반덤핑판정이 있고, 관세가 자동산정방식에 따라 부과된 경우 동 관세부과는 무역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는 19 USCA 1516a가 열거하고 있는 판정 또는 결정이라고 할 수 없어 심판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28 USCA 1581(c)에 근거하여 다툴 수 없다. 그러나 관세부과에 관련한 행정권의 행사 및 법의 집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관할권을 설정하고 있는 위 (i)에 기초하여 심판대상이 된다고 한다.

세관원의 관세액사정결정에 대한 불복이 가능한가에 관하여도 법원은 이를 긍정하고 있다. 즉 세관원의 관세액사정결정은 단순한 사무행위로서 불복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무역법원에 관할권을 부여하고 있는 28 USCA 1581 (a)-(h)상의 어떠한 조항에도 해당하지 않고, 당해 관세사정으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았다면 포괄적 관할권부여조항에 근거하여 무역법원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²³⁾ 따라서 국제무역법원의 심판대상으로서 갖추어야 할 처분성은 우리 행정소송법상의 처분성과 같이 엄격하지 않으며, 법

as to constitute a penalty.”라고 하였다(Pacific Giant, Inc. v. U.S. 26 C.I.T. 894, 223 F.Supp.2d 1336 CIT, 2002). 만약 외국기업과 국내기업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근거로 연방헌법상 평등권위반 주장을 하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21) *Hylsa, S.A. v. Tuberia Nat., S.A.*, 135 F. 3d 778, 1998 WL 56389, Fed. Cir. 1998.

22) *Royal Business Machines, Inc. v. U.S.*, 69 C.C.P.A. 61, 669 F. 2d 692, 3 Int'l Trade Re. BNA 1321, 1982.

23) *Torrington Co. v. U.S.*, 903 F. Supp. 79, 17 Int'l Trade Re. BNA 2277, Ct. Int'l Trade 1995.

원이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의 “관세부과에 관련한 행정권의 행사 및 법의 집행”이라는 법문을 근거로 당사자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광범위한 성격의 행위, 결정, 명령, 절차 등에 관하여 관할권을 행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무역행정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법통제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본다.

2. 司法節次의 補充性

2.1. 사법절차보충성원칙의 의의

사법절차의 보충성이라 함은 반덤핑에 관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구제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구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한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국가의 사법작용은 법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이를 선언하는 작용으로서 행정의 사법통제라는 관점에서 행정청에 대한 이의 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 법원에 불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법절차의 보충성은 우리 법상행정심판전치주의나 헌법소원의 보충성의 원칙 등과 비견될 수 있다. 미국의 반덤핑제도는 조사절차가 매우 복잡한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므로 조사절차의 개시결정이나 진행 중의 중간처분에 대한 사법통제가 가능한가, 최종판정시까지 기다리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가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중간단계에서 당사자의 법원에의 제소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즉 권리구제의 실효성의 문제와도 관련을 갖는다.

2.2. 판례의 태도

사법절차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덤핑판정이 있고 수입품에 대한 관세청산절차가 정지된 경우 그 해제를 구하는 가치분명령을 법원에 구하는 경우 19 USCA 1516a가 규정하는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가에 대하여 법원은 그러한 절차를 필요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가치분을 위하여 무익한 행정심판의 남용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무성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른 한편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라도 법문의 해석상 당해 행정심판이 필요적인 경우에 이를 거치지 않고 무역법원에 직접 제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다. 즉, Nichiman America, Inc. 사건에서 수입 TV에 대한 미국재무성의 덤핑판정에 대한 재심신청 없이 단순히 상무성을 상대로 반덤핑 관세액 산정에 대하여 무역법원에 제소하는 것은 절차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서 사법절차의 최종성 내지 보충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덤핑판정에 대한 재심과 관련하여 덤핑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당해 재심절차가 무익하다면 사법의 효율성, 헌법상의 적법절차의 원칙상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따라 무역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법원은 이러한 경우 당사자에게 재심절차에의 참여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고, 상무성은 절차의 진행 중이라도 당사자는 반덤핑관세의 부과에 대한 유예를 신청할 수 있고, 다양한 임시처분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법상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절차는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더라면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제소가 가능한 경우 이를 해태한 경우에는 국제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TV 수입과 관련하여 부당한 관세청산명령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 이의제기가 기간이 도과되어 행해졌다는 이유로 동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에 법원은 이의신청 후 제소에 관한 다른 법령의 관할권조항을 배타적 관할을 창설한 것으로 보아 제소할 수 없다고 보았다.²⁴⁾ 특히 당사자의 절차상 해태에 관한 책임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침해상품의 반입금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의 불복절차와 병렬적으로 관할을 인정하고 있다. 즉 관세청에 대한 이의신청이 각하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국제무역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²⁵⁾ 또한 관세액 산정방식에 관한 불복의 경우에도 이미 산정절차에서 다투었고 행정절차를 통하여 구제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역법원에 바로 제소할 수 있다.²⁶⁾ 연례재심에 있어 당해 연례재심절차의 진행금지처분에 관하여도 법원은 당사자가 연례재심최종판정이 있기까지 기다리는 경우 당사자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경우에는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따라 무역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

관세당국의 관세부과대상성판단과 이에 근거한 관세부과처분은 중국처분으로서 이를 다투기 위하여는 반덤핑관세에 관한 상급관청인 상무성에 품목 해당성 여부에 관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다투고, 이에 대하여도 불만이 있는 경우에는 1516a(a)(2)(B)(vi)에 근거하여 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1514(a)에서는 관세청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바, 1514(b)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상무성에 대한 품목 해당성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법상 근거 없는 관세청에 대한 이의제기와 동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무역법원에 관세청을 상대로 관세액 환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관할권이 부존재하여 부적법하다.²⁷⁾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다른 구제절

24) Fujitsu General America, Inc. v. U.S., 283 F. 3d 1364, Fed. Cir. 2002.

25) Luxury Intern., Inc. v. U.S., 69 F. Supp. 2d 1364, Ct. Int'l Trade 1999.

26) Koyo Seiko Co., Ltd. v. U.S., 186 F. Supp. 2d 1332, Ct. Int'l Trade 2002.

27) Fujitsu Ten Corp. of America v. U.S., 957 F. Supp. 245, 19 Int'l Trade Re. BNA 1150, Ct. Int'l Trade 1997.

차가 없거나 다른 구제절차가 명백하게 부적절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고, 명문상 구체적 불복방법이 규정된 경우에는 동 조항의 적용이 없다는 것이다. 당사자의 절차상 해태로 인하여 관할권이 부인되고 제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로 새로운 관세청산절차에 따라 실제청산이 있기 전 청산절차의 연기신청을 한 경우를 들 수 있다. 법에 정한 동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법원의 관할권이 부인된다.²⁸⁾

법원은 또한 양자조약 등에 따른 특별절차가 있는 경우, 법에 정한 절차를 해태한 청구인의 제소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관할을 부정하고 있다.

3. 情報公開의 禁止 또는 開始

행정관청의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무역법원이 관할권을 갖는가가 문제된다. 복지국가의 발달로 행정부는 많은 정보를 획득 관리하는 지위에 있게 되며, 이의 적절한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절차의 민주성을 확보하는 정기능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 기업의 영업비밀 등의 침해와 관련하여 그 한계의 획정이 문제된다. 철강생산업자가 상무성의 질의에 대한 자신들 답변서의 공개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법원은 이에 대한 사법심사가 가능하다고 보아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무역법원의 관할권에 관한 연방법률조항은 연방헌법에 근거한 것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포괄적으로 개념규정 하는 대륙법계와 달리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창설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처분을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한다는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고, 의회가 인정하지 않는 유형의 제소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를 금하는 법원의 명령을 구하는 사안에서 정보개시를 구하는 청구에 대한 관할권에 관한 28USCA1581(f)는 반대로 정보공개를 금지하는 청구를 부인하는 의회의 의사가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포괄적 관할권조항인 28 USCA (i)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의 금지에 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²⁹⁾ 행정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의 금지를 구하는 소송유형이 미국을 포함하여 전세계적으로 공법상의 전형적인 소송유형으로 자리잡아가는 경향을 고려할 때에 타당한 판단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보의 개시청구와 관련하여 무역법원은 적법한 관할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개시를 요구하는 정보가 위 (f)에 규정하는 바와 같이 “비밀성”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 Koyo Seiko Co., Ltd사건³⁰⁾에서 무역법원은 개시를 구하는 정보가 이미 원고인 수입업자에게

28) *Agro Dutch Industries Ltd. v. U.S.*, 358 F. Supp. 2d 1293, Ct. Int'l Trade 2005.

29) *Sacilor, Acieries et Laminoirs De Lorraine v. U.S.*, 3 Ct. Int'l Trade 191, 542 F. Supp. 1020, 3 Int'l Trade Re. BNA 2225, 1982.

공개된 경우에는 최소한 동 정보의 공개가 신속하게 개시되지 않았다거나 수입업자의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허여하지 않는 등의 특단의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상무성판정의 하자를 다룰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 行政契約

무역법원의 관할권은 전술한 바와 같이 미합중국 연방정부의 무역행정에 대한 사법통제에 관한 것으로서 공법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역과 통상에 관련한 계약에 근거한 분쟁은 동 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소위 행정관청과 행정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관한 분쟁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관하여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공법상 계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이를 공인하는 것이 다수설이다.³¹⁾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과 관련 원칙적으로 소위 상무성 등 행정관청과 행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동 행정계약상의 분쟁은 무역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통관물품의 평가와 관세청산을 위하여 외국시장가격과 국내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전통적인 기준(traditional methodology)”을 사용할 것을 수입업자와 정부와 합의한 경우에 이는 단순한 법적 주체간의 합의에 불과한 사법적 성격의 계약이 아니며, 전통적 기준이라는 것이 계약에 따라 단순명료하게 밝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덤핑법에 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요하는 것이므로 이는 관할권부여조항이 요구하는 “통관에 관한 행정과 법의 집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실시하면서,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따라 관할권을 긍정하였다.³²⁾

한편 수입업자가 재무성 및 상무성과 약정한 행정계약의 위반에 따라 행정청이 반덤핑판정을 내린 경우, 당해 사안의 쟁점이 반덤핑판정 외에 통관에 관한 행정처분을 일반적으로 문제 삼는 것이라면, 이는 19 USCA 1514(a)에 따라 이의제기가 가능하고 따라서 이에 대한 무역법원의 관할권을 규정하고 있는 28 USCA 1581(a)에 따라 행정청의 심

30) *Koyo Seiko Co., Ltd. v. U.S.*, 13 Ct. Int'l Trade 461, 715 F. Supp. 1097, 11 Int'l Trade Re. BNA 1321, 1982.

31) 행정계약이라는 개념에 대하여는 학자에 따라 견해가 갈리고, 그러한 개념자체를 부인하기도 한다. 본고에서는 행정계약을 공법상 계약과 사법상 계약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본다. 우리 대법원은 행정계약 중 공법상 계약은 행정소송에 있어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하고, 행정관청과의 계약이 순수한 사법상 계약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에 의하여 다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소송의 소송물, 또는 심판대상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에 관하여, 이병철, 「행정법강의」, 540-577면 이하 참조.

32) *Sharp Electronics Corp. v. U.S.*, 13 Ct. Int'l Trade 732, 720 F. Supp. 1014, 11 Int'l Trade Re. BNA 1839, 1989.

사(미국법상소위 “행정재판” 또는 우리 법상 “행정심판”)없이 바로 무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³³⁾ 그리고 관세청산과 관련하여 수입업자와 관세청간의 체결된 과산약정에 따른 분쟁은 무역법원의 관할에 속한다.³⁴⁾

반덤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와 소매업자간에 체결한 약정에 대하여 수출자인 생산자가 동 약정의 위법무효를 주장하면서 무역법원에 제소한 사안에서 행정청의 무역행정의 합법성여부를 심사하는 무역법원의 법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에 그러한 약정은 (i)법이 정하는 처분성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ii)행정청이 그러한 약정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iii)약정이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28 USCA 1581(c) 또는 19 USCA 1516a상의 관할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또한 19 USCA 1581(i) 에 따른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약정에 관하여 행정청에게 일정한 절차상의 법적 기준이 있고 그러한 절차상 위반을 다투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고 실시하면서, 행정청에 재량이 부여된 경우에는 재량의 일탈 남용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본 사안의 경우 원고가 절차상의 하자 등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약정의 집행 금지를 구하는 청구라면, 이는 행정의 합법성통제를 본연의 임무로 하는 국제무역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결론내리고 있다.³⁵⁾ 즉 행정청과 소매업자간에 체결된 약정은 공법적 성격의 행정작용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의 법원의 태도는 미국국내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미국국내소매업자와 정부가 담합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어 시장에 대한 정부의 중립원칙, 행정청의 행정행위는 법령에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행정의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본다.

5. 行政不作爲

우리 법상 입법부작위 및 행정부작위에 대하여 사법심사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의무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권력분립의 원리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즉 사법부는 그 권력속성상 법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선언하는 성격의 권력작용 이므로 적극적으로 입법부나 행정청에 의무이행을 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반덤핑법과 관련한 무역위원회 또는 상무성의 처분 및 결정에 대한

33) *Nichimen America, Inc. v. U.S.*, 9 Fed. Cir. (T) 103, 938 F. 2d 1286, 13 Int'l Trade Re. BNA 1443, 1991.

34) *Washington Intern. Ins. Co. v. U.S.*, 138 F. Supp. 2d 1314, Ct. Int'l Trade 2001.

35) *Montgomery Ward & Co., Inc. v. Zenith Radio Corp.*, 69 C.C.P.A 96, 673 F. 2d 1254, 3 Int'l Trade Re. BNA 1560, 1982.

적극적 의무이행화 소송은 인정되고 있다. 미국무역위원회나 상무성의 행정부작위에 대한 무역법원의 관할은 절차상 지체를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절차상 지체와 관련하여 확정된 반덤핑판정에 대한 연례재심의 거부에 대하여 국제무역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미국의 반덤핑법에 따른 반덤핑판정이 있게 되면 수출자는 상무성에 연례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덤핑 없음이 인정된 경우에는 비록 반덤핑판정자체가 실효되는 것은 아니지만, 장래의 수입에 대하여 반덤핑관세를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에 그러한 연례재심을 행하지 않은 것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당사자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즉 행정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은 반덤핑판정이고 연례재심의 부작위는 반덤핑판정의 효력과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무역법원은 *Interredec, Inc v. U.S.*³⁶⁾에서 반덤핑관세의 예치에 영향을 미치고, 연례재심을 통하여 덤핑의 지속적 부재를 인정받아 반덤핑판정을 철회시킬 수 있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고, 동 관할권은 19 U.S.C.A. 1516a 에 열거된 행정청의 최종적 처분(final determination)이 아니라도 28 U.S.C.A. 1581 (c)에 따라 다룰 수 있어, 28 U.S.C.A. 1581 (i)의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근거하여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절차상 지체의 행정부작위에 대한 관할권존부와 관련하여 법원이 고려하는 사항은 동 지체가 사법권의 행사에 지장을 줄 정도로 부당한 지체인가 하는 점이다. 즉 절차가 비합리적으로 지연되거나 절차상 지체가 사법심사회피에 이를 정도인 경우에는 법원은 적극적으로 동 지체에 대한 사법심사를 인정한다. *Nakajima All co., Ltd. v. U.S.*³⁷⁾에서 일본의 수출자가 상무성과 국제무역위원회의 예비 및 최종판정을 확정 공표해줄 것을 청구함에 대하여, 무역위원회는 그 심사 및 판정에 있어 법상 재량권을 갖지만, 그러한 재량권의 행사가 비합리적, 자의적이거나 법에 위반하여 부당한 지체로 수출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면서 관할권을 긍정하였다. 또한 부당한 지체가 있는 경우 무역위원회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가가 문제된다. 위 사안에서 법원은 부당한 지체가 있는 경우 19 U.S.C.A 1516a or 28 U.S.C.A. 1581(c)상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무역위원회의 주장을 배척하고 포괄적 관할권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법원이 부당한 지체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당사자의 권리를 구제하고 엄격하게 관할권을 행사하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국제무역법원은 덤핑결정에 대한 재심에 관하여 덤핑판정의 취소요건을 2회에

36) *Interredec, Inc. v. U.S.*, 11 Ct. Int'l Trade 45, 652 F. Supp. 1550, 8 Int'l Trade Re. BNA 1997, 1987.

37) *Nakajima All co., Ltd. v. U.S.*, 12 Ct. Int'l trade 585, 691 F. Supp. 358, 1988.

걸쳐 충족시켰으면서도 행정청의 거듭된 지체로 인하여 15년간 취소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관할권을 긍정하였다. 한편 반덤핑제소기업이 반덤핑조사신청과 철회를 반복하면서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상무성의 최종덤핑판정이 나오기 전이라도 절차상 지연에 대하여 수입업자연합은 동 절차상 지연에 대하여 무역법원의 사법심사를 구할 수 있고,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³⁸⁾ 즉 법원은 상무성의 최종판정이 있는 때에만 28 USCA 1581 (c)의 관할권이 창설된다는 상무성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러한 지체는 불공정무역의 규제 및 관세수입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무역법원은 28USCA 1581(i)에 따라 관할권을 갖는다고 보았다. 위 2가지 사례는 우리기업과도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본다. 한번 덤핑판정을 받으면 좀처럼 취소되지 않는 현실에서 부당한 취소거부에 대한 사법적 구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절실하다 아니할 수 없다. 또한 미국의 반덤핑제소기업의 횡포도 우리나라 기업은 물론 외국수출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처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덤핑제소기업과 행정청의 불합리한 신보호무역주의적 태도에 대하여는 법원이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6. 管轄權에 관한 기타의 문제

6.1. 政府의 反訴 등

관세청산에 관한 수입업자의 소송에서 관세저평가에 따른 정부의 반소를 허용하고 있고, 수입품의 품목분류에 관한 결정은 법적 문제로서 심판의 대상이 되며, 또한 관세청산에 관한 상무성의 행정명령 역시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따라 무역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보았다.³⁹⁾ 관세저평가에 따른 정부의 반소는 본소가 관할권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적법각하 된 경우에는 반소 역시 관할권부재로 각하된다.

행정소송의 대상성 판단에 있어 원처분주의와 관련하여 미국재무성이 내린 반덤핑판정에 근거하여 상무성이 일정 수입품이 당해 반덤핑결정상의 품목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행한 결정에 대한 제소가 허용되는가가 문제된다. 국제무역법원은 원처분인 미국 재무성의 반덤핑판정이 아닌 상무성의 품목분류에 관한 결정에 대한 불복은 한시법에 규정된 절차규정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⁴⁰⁾

소송물이 법원의 판결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무역법

38) Daido Corp. v. U.S., 16 Ct. Int'l Trade 681, 796 F. Supp. 533, 14 Int'l Trade Re. BNA 1790, 1992.

39) American Permac, Inc. v. U.S., 116 F. Supp. 2d 1317, Ct. Int'l Trade 2000.

40) Alsthom Atlantique v. U.S., 4 Fed. Cir. (T) 71, 787 F. 2d 565, 7 Int'l Trade Re., BNA 2071, 1986.

원의 심판대상성에 관하여 일정한 경우에 이를 인정하고 있다. 상무성의 최종판정 및 이에 대한 재심에 대하여 불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무역법원은 먼저 심판의 이익이 있는가를 심리하여야 하는 바, 재심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등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심판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최종판정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심판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는 19 U.S.C.A 1516a가 아닌 19 U.S.C.A 1581 (i) 의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따라 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한편 반덤핑관세의 미납에 관한 이자산정에 관하여 어떠한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무역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이자의 산정에 관한 행정절차는 상무성의 행정명령에 따라 세관원이 행하게 되어 있는 바, 이에 대한 불복은 상무성의 판정에 대한 관할권을 규정한 19 USCA 1516c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고, 상무성의 행정명령에 위반한 이자산정의 경우에는 19 USCA 1516a 그 외의 경우에는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에 따라 무역법원이 관할권을 행사하게 된다.

6.2. 條約上 管轄權과의 競合

북미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일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역법원의 관할권은 부인되고,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관한 사법심사를 위하여 협정에 따라 양국정부에 의하여 특별히 구성된 패널에 배타적 관할권이 부여된다.

V. 國際貿易法院管轄權問題의 性格과 意義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문제는 무역행정의 사법적 통제, 사법적극주의 또는 소극주의 등 미국법원의 사법정책, 國際經濟的 차원에서의 기업의 정당한 권리구제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본고에서는 반덤핑에 관한 국제무역법원의 관할에 관하여 判例의 態度를 살펴본바, 관할권문제의 성격과 의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무역법원은 미국의 연방국가성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특수성을 갖는다. 연방헌법상 미의회 및 대통령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연방헌법에서 부여한 일정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동 권한행사와 관련하여서는 연방헌법 및 연방법률의 최고성의 원칙 (federal supremacy)에 따라 주헌법 및 법률에 우선한다.⁴¹⁾ 그러나 연방헌법상 국가의

41) 미국헌법 제 6조 참조.

경찰규제권한은 포괄적으로 州政府에 위탁되어 있다.⁴²⁾ 따라서 연방차원에서의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는 일찍이 문제될 여지가 없었으며,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에 있어 행정법의 발달은 대륙법계의 법치행정의 원칙과는 달리 뒤늦게 발달한 영역이다. 우리와 같은 영업허가 및 취소, 건축허가, 운전면허 등 많은 행정영역이 주정부의 권한사항이므로 연방차원에서 일반적으로 행정청의 행정행위의 적법성확보를 위한 행정의 사법통제라는 관념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연방정부의 행정행위에 대한 사법통제의 문제는 연방헌법상의 통상에 관한 연방의회의 권한에 근거하여 주간통상 및 국제통상영역에서의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사법통제가 주를 이루는 것도 그것이다. 따라서 국제무역법원의 관할문제는 연방의회가 제정한 관할권부여법률에 엄격하게 기속되어 그 한도에서 창설적 성격을 가지며, 또한 貿易委員會 및 商務性 등 독립규제위원회 또는 행정청이 상당한 정도의 사법적 성격의 권력작용을 행하고, 사법부와 행정기관간의 역할분담이 불명료한 것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과 관련을 갖는다.

둘째, 통상문제의 첨예화와 미국의 부당한 통상정책과 관련하여 국제무역법원의 사법통제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점이다. WTO 탄생은 경제대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따른 국제통상의 多者主義化가 하나의 동인으로 작용하였고, 역만장일치제의 채택 등도 국제통상에 있어 법치주의를 확보하여 경제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는 국가들을 보호하는데 일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국제적 조류에 발맞추어 국제무역법원의 상무성 등 무역위원회에 대한 적극적 사법통제는 미국이 세계최대의 수입국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아니할 수 없다. 국제무역법원이 반덤핑규제외의 영역에서 비교적 司法消極主義的 입장에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도, 관할권인정여부에 있어 너무 엄격하고 제한적인 입장에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⁴³⁾ 미국무역법원이 앞서본 바와 같이 Byrd법의 위헌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셋째, 수출과 수입 등 국제무역의 주체인 기업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내법적 구제가 보다 실효적이라는 점이다. WTO의 분쟁해결절차를 통하여 통상분쟁을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제소권자는 회원국정부 등에 한하고, 국제통상규범에 근거한 국제공법적 분쟁에 한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간접적 해결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통상에 관한 국제협정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는 기업 또는 국내산업은 법적으로는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여 소속국정부에 WTO에 제소해줄 것을 請願할 수 있을 뿐이다. 미국의 국제무역법원 등 국내법원은 WTO기구와는 분쟁의 성격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기업이 직접 통상에 관한 행정청의 규제에 대하여 법원의 사법심사를 구함으로써 권리구제 및 집행의 확보에 있어 효율적이다. 특히 미국이 세계최대의 수입국인 점을 감안할

42) 미국수정헌법 제 10조 참조.

43) 이성덕, “미국의 통상정책과 법원”, 『IRI 리뷰』 2권 1호(1997).

때에 그 관할권범위의 확정의 문제는 세계의 많은 기업과 무관한 것이 아니다.

넷째, 국제무역법원은 사법심사를 함에 있어 국제통상규범과 국내법 모두가 사안의 해결을 위한 법규범으로 기능한다는 것은 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자명할 것이다. 이때에 국제무역법원의 견해가 WTO 분쟁해결기구의 의견과 다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의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통상문제에 있어 경제적 역학관계를 재는데 시금석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국제무역법원은 사법권의 독립, 행정에 대한 적법성 확보라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不當하고 違法한 통상압력 등 정치적 성격의 통상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여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사법적 극주의적 태도는 WTO의 분쟁해결기구의 활동과 보조를 같이하여 통상영역에서의 법문화발달에도 일조할 것으로 본다.⁴⁴⁾

다섯째,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을 지배하는 법리는 소위 公法的 영역으로서 영미법의 전통적인 法源인 普通法の 원리가 지배하는 영역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측면이 있다. 관할권의 범위와 제소적격을 심리함에 있어 의회제정법률에 대한 해석론적 방법이 사용되며, 따라서 성문법과 解釋法學이 주류를 이루는 대륙법계와 유사하다. 국제무역법원은 관할권부여법령의 문리해석을 기초로 입법연혁, 입법자의 의사 및 구체적 사안에서 당사자간의 형평, 행정의 합법성확보를 위한 사법통제라는 이념을 고려하여 관할권존재여부를 판단한다.

여섯째, 국제무역법원은 국제통상에 관한 전문법원, 경제법원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법원이 법령을 해석하고 관할권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서도 사안이 가지고 있는 통상문제로서의 성격 및 의의, 국내경제 및 국제경제에의 파급효과, 경제적 정의의 확보라는 이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홈즈 및 로스코 파운드가 갈파한 미국법문화의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법사회학적 접근방법이 강조되듯이, 국제무역법원의 경우에는 經濟法的 또는 法經濟學的 접근방법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관할권확정에 있어 국제무역법원의 태도는 의회제정법령에 대한 법해석학적 방식을 중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사법통제, 경제영역의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보라는 관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사법부가 미국의 정지경제적 보수주의화의 영향을 받아 미국기업과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시한다면 문제는 더욱 악화될 소지도 있다.

일곱째, 국제무역법원은 반덤핑과 상계관세법에 관한 분류에 대한 사법심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보조금에 관한 미국의 통상법, 수입규제조치, 기타 통상행정영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것은 반덤핑법과 관세 문제가 법적인 분쟁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연유한다. 그러나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 통상정책에 관한 사법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제경제적 차원에서의 정의와

44) 이성덕, 상계논문.

형평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국제무역법원은 제한적 역할만을 할 수 밖에 없다. 敎條主義的인 해석론적 법학에서 벗어나, 수입규제조치, 슈퍼 301조 등 공격적 통상정책에 대한 사법통제가 실질화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⁴⁵⁾ 본고에서는 반덤핑법에 관한 미국 무역법원의 판례를 살펴본바, 기회가 닿는 대로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례이론을 소개하려 한다.

여덟째, 반덤핑법의 관할권 행사에 있어 특징적인 점은 미국무역법원이 28 USCA 1581(i)의 포괄적 관할권유보조항을 그 근거조항으로 원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미국 무역법원이 반덤핑법 영역에서는 準立法者로서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법통제를 실시한다는 반증이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VI. 結語：大韓民國 貿易行政과 司法統制

대한민국의 무역행정에 관하여는 1986. 12. 31 제정된 對外貿易法과 WTO 탄생으로 세계경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不公正貿易行爲調査 및 産業被害救濟에 관한 法律이 대표적인 법률로서 무역행정의 법적 근거가 되고 있으며, 관세행정에 관하여 관세법이 제정되어 있다. 대외무역법은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무역규제조치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⁴⁶⁾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WTO의 탄생에 발맞추어 불공정 무역행위와 수입의 증가 등으로부터 국내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지적재산권침해상품 또는 원산지허위표시 내지 오인상품에 대한 수입을 규제하고, 수입의 증가로 인한 수입제한조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⁴⁷⁾

이러한 제정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의 무역 및 관세행정은 産業資源部와 貿易委員會가 담당하고 있는 바, 산업자원부는 미국의 상무성에 해당하는 권한과 책임을 무역위원회는 미국의 무역위원회와 유사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권한의 위임에 따라 일정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세관장, 수출입추천기관장 등이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⁴⁸⁾

45) 사실 행정재량적 성격이 강한 공격적 통상정책에 대한 사법심사는 어려운 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에 관하여, 여택동 외 3인, “미통상법 301조 관련 통상협상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협상연구」 4권 1호(1998).

46) 대외무역법 제 1조.

47)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 1조.

이러한 法制와 행정청의 권한과 책임에 관한 구도에 의할 때에, 우리의 무역행정은 미국에 비견될 만한 상당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미국 통상법 슈퍼 301조의 우선협상대상국 지정과 협상진행, 자발적 수출규제조치 등 몇 가지 경우에 차이를 보이고는 있다. 국제통상에 있어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화되고, WTO 등 국제기구에 의하여 국제통상관리체제가 정비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행정부의 대응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부의 대비와는 달리 우리의 사법부, 기업, 그리고 법률전문가가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는 의문이다.

첫째, 무역행정에 대한 사법통제가 기존의 일반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체제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검토해 볼 일이다. 무역행정은 고도의 경제적 마인드가 필요한 전문법영역으로서, 전문법원에 의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최소한 기존의 행정법원에 무역전담 특별부를 두어 무역행정에 대하여 보다 넓고 전문적인 시각에서 사법통제를 해 나가야 한다. 동 아시아 경제의 블록화 현상 등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교역이 증대하고,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소송이 개발되리라 예상되고 또 그래야 한다. 기존의 관세의 위법한 부과, 관세법 처벌, 원산지표시위반 등 무역법 규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부과 등 몇 가지 전형적인 유형의 소송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수입제한조치, 체계적인 덤핑행위의 조사와 상계관세의 부과와 이에 관련한 행정청의 처분, 지적재산권침해상품에 대한 통관금지,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부과 등에 대하여 국내 수입업자 또는 외국수출자의 소송제기가 증대되고, 이러한 다양한 유형의 소송에 대하여 보다 전문적으로 대처할 전문법원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우리기업이 무역행정의 사법통제와 관련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전문적 법률자문을 받을 역량이 있는 대기업 외에 대부분의 기업은 무역에 있어 자기에 부여된 법적 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수출기업이 미국 등 외국에 상품을 수출함에 있어 무역법규에 위반하여 조사절차가 개시되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보다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기업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하여도 미국 등 선진국 기업에 비하여 둔감하거나 소극적이다.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기업은 자신의 기업환경을 보다 국제적으로 파악하고, 통상법규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권리행사에 적극적이다. 미국의 무역법원에의 제소 중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국내기업의 청원과 이에 대한 행정청의 처분 등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여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도 역시 대한민국기업이 國際通常環境變化에 대처하는 속도가 느리고, 법보다는 정서에 치우친 법률문화, 기업에 체계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법률문화 및 제도의 미확충, 법률자문에 드는 비용을 소화하기 어려운 열악한 기업조건 등이

48) 서정두, 「국제통상법」(삼영사, 2001), 195-200면 참조.

그 원인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통상과 관련한 우리나라법제는 매우 선진화되어 있다. 화학, 섬유, 금속, 기계 및 전자부품과 관련하여 국내기업들이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의 국가들의 덤핑행위로 피해를 보고 있는 현실이고, 이에 관하여 무역위원회의 활동이 있어 왔으나, 그 이용률은 선진국에 비하여 저조하다. 貿易協會에서는 수입규제대응자금으로 6억 5천만원을 확보하고, 외국수출업체를 상대로 무역위원회에 덤핑제소를 하는 기업에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비용을 무상지원해주고 있고, 향후 그 자금은 늘어날 전망이다. 또는 중국교역의 대폭 증가와 중국정부의 대한국기업에 대한 반덤핑조치 남발, 향후 일본의 반덤핑제도 강화움직임과 맞물려 기업의 법적 대응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물론 前述한 바와 같이 이러한 필요에 대응하는 한편, 국내무역행정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전문법원의 설립 등이 필요한 것은 물론이다. 무역위원회의 통계를 보더라도 반덤핑 조사시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 경우에는 54%의 무혐의판정을 받았으나,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 무혐의판정은 17%에 불과하다. 따라서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가 적극 참여하여 조사절차에서의 무역행정의 합법성 확보가 필요하고, 나아가 무역법원 또는 무역전담부에 의한 무역행정의 사법적 통제의 문제를 再吟味해볼 필요가 있다.

♣ 參考文獻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
김기영, 「헌법강의」, 박영사, 2002.
서정두, 「국제통상법」, 삼영사, 2001.
이병철, 「행정법강의」
이춘삼, 「미국의 반덤핑법 : 문제점과 대응전략」, 서울경제출판사, 1987.
여택동 외 3인, 「미통상법 301조 관련 통상협상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협상연구」 4권 1호, 1998.
이성덕, 「미국의 통상정책과 법원」, 「IRI 리뷰」 2권 1호(1997).
주용준, 「미국행정법의 생성과정과 사법심사문제」, 「학술지」 2권 1호.
정철호, 「미국통상법의 입법패턴과 제도 변화」, 「외대논집」 19권 3호, 1999.
- Stone, G외 3인 공저, Constitutional Law, Little Brown, Ltd., 1991.

♣ 參考判例

- Ad Hoc Committee of Florida Producers of Gray Portland Cement v. U.S., 18 Ct. Int'l Trade Re. BNA 2356, 1994.
- Agro Dutch Industries Ltd. v. U.S., 358 F. Supp. 2d 1293, Ct. Int'l Trade 2005.
- Alhambra Foundry., Ltd. v. U.S., 12 Ct. Int'l Trade 343, 685 F. Supp. 1252, 10 Int'l 1110. 701 F. Supp. 221, 10 Int'l Trade Re. BNA 2364, 1988.
- Alsthom Atlantique v. U.S., 4 Fed. Cir. (T) 71, 787 F. 2d 565, 7 Int'l Trade Re., BNA 2071, 1986.
- Agro Dutch Industries Ltd. v. U.S., 358 F. Supp. 2d 1293, Ct. Int'l Trade 2005.
- American Permac, Inc. v. U.S., 116 F. Supp. 2d 1317, Ct. Int'l Trade 2000.
- Asociacion Colombiana de Exportadores de Flores (Asocoflores) v. U.S., 13 Ct. Int'l Trade 584, 717 F. Supp. 847, 11 Int'l Trade Re. BNA 1645, 1989.

Associacao Dos Industriais de Cordoaria E Redes v. U.S., 17 Ct. Int'l Trade 754, 828 F. Supp. 978, 15 Int'l Trade Re. BNA, 1994, 1993.

Brother Industries, Ltd. v. U.S., 15 Ct. Int'l Trade 387, 769 F. Supp. 374, 13 Int'l Trade Re. , BNA, 1688, 1991.

Corus Group PLC v. Bush, 217 F. Supp. 2d 1347, Ct. Int'l Trade 2002.

Daido Corp. v. U.S., 16 Ct. Int'l Trade 681, 796 F. Supp. 533, 14 Int'l Trade Re. BNA 1790, 1992.

Fujitsu Ten Corp. of America v . U.S., 957 F. Supp. 245, 19 Int'l Trade Re. BNA 1150, Ct. Int'l Trade 1997.

Harrman & Reimer Corp. v. U.S., 1 Ct. Int'l Trade 148, 509 F. Supp., 1276, 2 Int'l Trade Re. BNA 1305, 1981.

Huffy Corp. v. U.S., 9 Ct. Int'l Trade 107, 604 F. Supp. 1250, 6 Int'l Trade Re. BNA 2049 1985.

Hylsa, S.A. v. Tuberia Nat., S.A., 135 F. 3d 778, 1998 WL 56389, Fed. Cir. 1998.

Interredec, Inc. v. U.S., 11 Ct. Int'l Trade 45, 652 F. Supp. 1550, 8 Int'l Trade Re. BNA 1997, 1987.

Koyo Seiko Co., Ltd. v. U.S., 13 Ct. Int'l Trade 461, 715 F. Supp. 1097, 11 Int'l Trade Re. BNA 1534, 1989.

Luxury Intern., Inc. v. U.S., 69 F. Supp. 2d 1364, Ct. Int'l Trade 1999.

Montgomery Ward & Co., Inc. v. Zenith Radio Corp., 69 C.C.P.A 96, 673 F. 2d 1254, 3 Int'l Trade Re. BNA 1560, 1982.

Nakajima All co., Ltd. v. U.S., 12 Ct. Int'l trade 585, 691 F. Supp. 358, 1988.

NEC Corp. v. U.S. Dept. of Commerce, 967 F. Supp. 1305, 19 Int'l Trade Re. BNA 1553, Ct. Int'l Trade 1996.

Nichimen America, Inc. v. U.S., 9 Fed. Cir. (T) 103, 938 F. 2d 1286, 13 Int'l Trade Re. BNA 1443, 1991.

Pacific Giant, Inc. v. U.S., 223 F. Supp. 2d 1336, Ct. Int'l Trade 2002.

PPG Industries, Inc. v. U.S., 2 Ct. Int'l Trade 110, 525 F. Supp. 883, 3 Int'l Trade Re., BNA 1304, 1981.

Royal Business Machines, Inc. v. U.S., 69 C.C.P.A. 61, 669 F. 2d 692, 3 Int'l Trade Re. BNA 1321, 1982.

Sacilor, Acieries et Laminoirs De Lorraine v. U.S., 3 Ct. Int'l Trade 191, 542 F. Supp. 1020, 3 Int'l Trade Re. BNA 2225, 1982.

Sharp Electronics Corp. v. U.S., 13 Ct. Int'l Trade 732, 720 F. Supp. 1014, 11 Int'l Trade Re. BNA 1839, 1989.

Techsnabexport, Ltd. v. U.S., 16 Ct. Int'l Trade 420, 795 F. Supp. 428, 14 Int'l Trade Re. BNA 1403, 1992.

Torrington Co. v. U.S., 903 F. Supp. 79, 17 Int'l Trade Re. BNA 2277, Ct. Int'l Trade 1995.

Washington Intern. Ins. Co. v. U.S., 138 F. Supp. 2d 1314, Ct. Int'l Trade 2001.

<Abstract>

Judicial Review of the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in USA: How it Perceives its Jurisdictional Dispute concerning the Anti-dumping laws and it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Ki-young Kim

This paper intends to articulate the jurisdictional issue of th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CIT), particularly dealing with a legal dispute of the Anti-dumping law. While the international trade grows to be marshalled by a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 of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the role of CIT correspondingly plays a great deal of effect on this area of laws. It is considered that both arbitrating institutions have to drive a reasonable rule over the trade issues. This is particularly so in various viewpoints. The law of USA has influenced significantly over WTO, and its take is fairly greater than other WTO members in economic terms. Under this background, I attempt to probe an attitude of CIT in dealing with jurisdictional issues including the extent of judicial activism and theoretical ground for resolving those issues while providing a comparative articulation to the general doctrine of administrative law. I also point out the significance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jurisdictional issue in terms of the U. S. legal system, which, I hope, can provide a little guidance to the current Korean jurisprudence. Lastly, I stress the need for judicial reform within Korea as well as more affluent provision of legal counselling, which I think vital to accomodate a rapid development of trade environment.

📌 주제어 (Key-Word)

미국무역법원, 반덤핑법, 관할권, 무역행정, 행정의 사법통제, 전문법원, 상무성, 무역위원회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Anti-dumping laws, Jurisdiction, International Trade Administration, 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on, Special Court, Department of Commerc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